가 평 군

STRATHFIELD COUNCIL

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

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

자매결연협정서

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는 (이하 양도시라 칭한다) 국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상호간에 경제적, 사회적,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합의한다. 이 협정을 통해 양 도시는 자매도시 관계를 체결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기로 한다.

1. 양도시는 행정, 교육, 문화, 관광 등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추진한다
2. 양도시는 공무원, 학생, 민간 근로자 교환을 포함한 양도시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
3. 양도시는 상호간 지역 농산물과 공산품의 생산 · 판매를 협력 지원 한다
4. 양도시는 위에 언급된 분야 외에도 공통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상호간 사전 통의 하에 교류협력을 할 수 있다.
5. 본 협정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다. 양도시는 국문과 영문 2개의 협정서를 보관하며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2011년 8월 22일

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수	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스트라스필드시장
이 진 용	시알 토니 마룬